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8 5. 6.  
시민보사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8년 4월 2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1998년 4월 28일 제56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시민생활국장 조수만)

### 가. 폐지이유

- '97년 12월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9.3%로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(시행기간 :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% 달성시까지 시행한다)의 규정에 따라 조례 폐지코자 하며 조례 폐지후 동 기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하여 우리구 재정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조례폐지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유제한)

본 조례의 제정은 '91.12.12일 정기회시 의결된 내용으로써, 당시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25.2%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가스보급 확대를 통하여 시민생활 개선과 청정연료 보급으로 맑은 공기보존과 환경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서민들이 쉽게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시설 자금과 사용시설 자금을 조성 지원하기로 하였던 바, 보급률 70% 달성시까지만 지원하기로 한 당초 조례 부칙 제2항에 의거하여 현재 보급률 89.3%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조례 부칙 규정대로 폐지하고, 구 재정이 불투명하므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운용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,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한 향후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.

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의안 번호	16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8. 4. 20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폐지이유

'97. 12월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89.3%로써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(시행기간 :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70% 달성시까지 시행한다)의 규정에 따라 조례 폐지코자 하며 조례 폐지후 동기금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하여 우리 구 재정운용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 : 조례폐지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(폐지근거)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부칙 제2항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- 다. 협조사항 : 없음
- 라. 조례 안 : 별첨

첨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(안) 1부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상환 조건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금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③ (상환금의 세입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되었거나 회수될 용자 원리금 및 예탁금 이자는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.
- ④ (폐지규정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